

특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특허분산 효과, 기술대안 효과, 법제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오 병 석

지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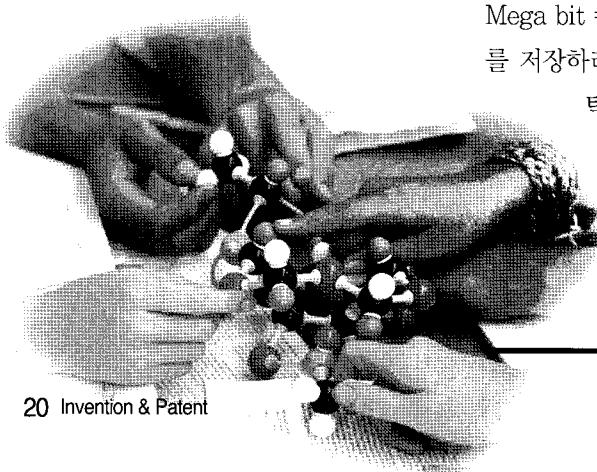
기업 간 경쟁과 핵심 특허의 분산

연구/개발 경쟁과 필수 특허의 분산

1960년대 말 미국은 새로운 노다지 산업의 등장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대량의 정보를 모래 추출물로 만들어진 손톱만한 크기의 네모난 조각에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 반도체 메모리였다. 이전까지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 중에는 도넛처럼 생긴 작은 자석인 마그네틱 코어라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마그네틱 코어를 사용해서 1메가 비트(1 Mega bit = 1,048,578 bit)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백만 개 이상의 마그네틱 코어를 가로 세로로 엮인 철사들 사이에 꽂아 넣어야 했다. 넓은 미국땅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무

리가 있었다. 대안으로 드럼통 둘레에 마그네틱 테이프를 붙여 사용해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당시엔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인지라, 여의치 않았다. 이러던 와중에,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금맥이 발견된 것 같았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력 사업 영역과 무관하게 많은 투자를 과감히 결정하고 연구에 돌입했다. 수년에 걸쳐 성능 좋고 효율적인 메모리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발명되고 사라졌다. 결국,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메모리의 기술적 구조와 사양들이 결정되고 양산에 성공했으며, 초기에 연구 개발에 뛰어든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원천 특허(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에 대한 특허)들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열심히 찍어내고 팔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시장에선 여전히 극심한 경쟁이 사라지지 않았다. 채산성은 나날이 떨어졌고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서, 특히 많은 원천 특허들을 보유한 인텔 같은 회사도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고 프로세서 사업에 전념하기로 하거나 IBM도 메모리 사업은 접고 시스템 사업에 주력하는 등, 하나 둘씩 사업을 정리하고 시장에서 떠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8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 기업에 이어 시장에 쫓아들어갔던 일본 기업들에 이어 한국 기업들까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대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들 한국 기업들은 그 당시 원천 특허는커녕 단 한 건의 관련 특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기존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원천 특허를 이용해 본격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인텔,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exas Instrument)를 위시한 선발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로열티를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을 시장에서 추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로열티 협상에서 한국 기업들을 굴복시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의 기업들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 그 많은 원천 특허는 모두 어디로 가

고 관련 특허 한 건 없던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멀쩡히 시장에서 활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특허의 시장 방어력은 애당초 존재하기라도 했던 것인가?



특허 분산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도체 메모리 산업 분야에서는, 초기에 여러 기업들이 동시 다발적 연구 개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연구 개발을 통해 창출된 반도체 메모리의 필수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 몇 개의 기업들 사이에 분산되어 소유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들은 상호 간에 서로의 필수 특허를 사용해야 했으므로 특별한 분쟁 없이 양산에 돌입했고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다. 그러자 후발 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일본의 기업들이었다. 이 일본 기업들은 미국 회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을 이용해 특유의 섬세함으로 더 저렴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혼란스러워졌고 영업력과 효율성에서 뒤쳐진 일부 선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들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생산 규모를 확대했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은 더욱 떨어졌다. 결국 일부 선발 기업들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하고 대신 가지고 있는 필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만족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후발 기업들에게는 도리어 합법적인 시장으로의 입장권이 되는 셈이었다. 매출의 극히 일부¹⁾에 불과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신 생산성을 그 만큼 향상시키는 방법을 추구하면 되었던 것이다. 80년대 들어서자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의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흡내 내며 시장에 진입했고, 더욱 저렴한 메모리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80년대 말에는 일본 기업의 전철을 밟으며 역시 대대적인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나 이들은 95%가 넘는 실로 놀랄만한 수율을 자랑하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이겨나갔다.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기존 기업의 특허를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특허를 획득해 나가면서 지불 로열티의 총액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만큼 선발 기업들의 특허에 의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즉, 초기의 연구 개발 경쟁으로 인해 당해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이 몇 개 기업들 사이에 분산되어 소유된 경우, 이들 원천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중 일부가

1) 통상 반도체 산업에서 특허 로열티는 매출의 약 1% 전후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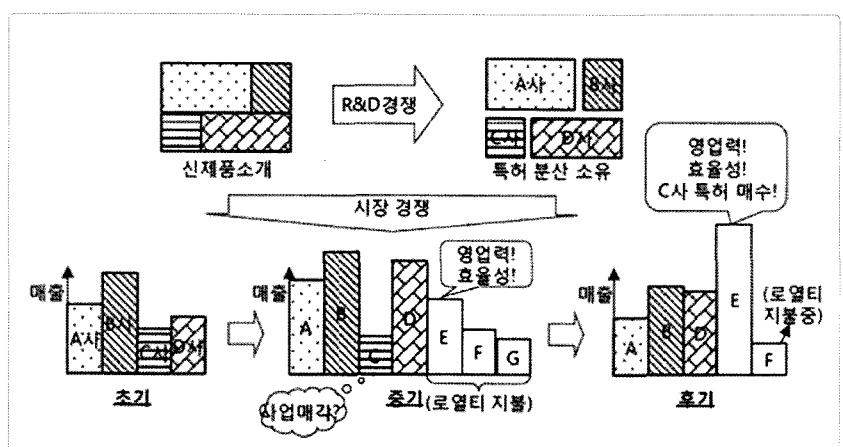
시장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면, 나머지 기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진출 기업에 대한 특허의 시장 방어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이 특허를 행사해서 시장을 방어하는 대신, 후발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징수하거나 특허를 판매(보통은 생산 설비와 함께)함으로써 금전적 수입을 얻는 것 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이것을 ‘특허 분산 효과’라 부르자.) 이러한 특허 분산 효과로 인해 한 기업이 필수 특허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에 비해, 몇 개 기업이 필수 특허들을 분산하여 소유하는 경우 특허의 가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것은 후발 기업이 새로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기업들 사이에 필수 특허가 거의 대등한 정도²⁾로 분산되면, 이들 상호 간에는 특허에 의한 시장 보호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어 이들 사이의 시장 경쟁에 있어서

특허의 영향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P&G와 캠벌리 클락은 기저귀에 관한 특허로 일승 일패를 거두었다. 이 기저귀 특허 전쟁에서의 승자는 역시 변호사들뿐이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기업이 특허를 갖고 있지 못했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 이들은 서로를 압도하기 위해 특허 이외에 다른 경쟁 요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을 아래 [그림 1]에 요약했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업이 특정 제품의 필수 특허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예가 있을까? 필자는 자체적으로 잉크젯 프린터의 하드웨어에 대한 한국 특허를 조사해 본 적이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 등록된 잉크젯 프린터 하드웨어에 관련된 필수 특허는 휴렛-팩커드(HP) 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대부분은 1996년도 이전에 출원된 것들이었다. HP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 잉크젯 프린터의 하드웨어는 그 구조가 그다지 복잡할 것이 없어서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HP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96년 이후에도 HP는 잉크젯 프린터와 관련된 한국 특허를 상당수 출원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은 잉크나 용지 또는 화질 개선 알고리즘 등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캐논이나 세이코 엡손과 같은 회사들도 이 분야에서 한국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받고 있었으나 이 회사들의 특허는 대부분 96년도 이후에 출원된 것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세계 1위는 HP이다. 또한, 폴라로이드 역시 필요한 특허를 집중 확보함으로써 코닥과 같은 회사를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데에 성공한다. 폴라로이드는 인화지를 신속히 현상시키는 현상액에 관한 물질 특허들을 500건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코닥은 즉석 인화 카메라에 필요한 특허들을 한 건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

이러한 특허 분산 효과가 특허의 실질 가치를 저하시키는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실제로 기업들이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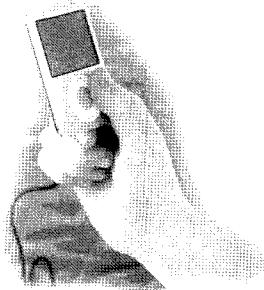
[그림 1. 기업간 경쟁과 특허 분산 효과]

정도의 로열티 금액을 주고 받는가에 관하여는 양측 모두 기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히 조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휴대 전화 분야에서 퀄컴이 제시하는 로열티 수준과 GSM 진영이 제시하는 로열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하나의 힌트가 될 것이다. 사실 최근의 사정을 보면 퀄컴이 예전과 같은 도도한 자세로 나올 여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하지만 GSM과 같은 대안이 없었다면 어떨까? 역으로, CDMA와 같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GSM에 관한 모든 특허를 독점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다른 예로, 아래에 설명하는 특허풀이라는 것이 대체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로열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이 질문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또한 특허 분산 효과는 특허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효과 중 시장 효과를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특허의 실질 가치를 저하시킨다.

양날의 특허풀

현재 휴대용 MP3 플레이어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애플이다. 그러나 애플의 아이팟이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의 레인컴이라는 회사가 플래시 메모리 탑재 시장에서 1위를 석권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애플에 이

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사는 MP3에 관련된 특허는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 애플도 MP3 플레이어와 관련해서는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MP3와 관련하여 그렇게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초창기 MP3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필립스 같은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MP3와 관련된 특허들은 특허권자들로부터 독립된 별개 법인인 MPEG LA LLC라는 회사가 일괄하여 관리하고 한다. 이들은 MPEG 압축 알고리즘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들을 원하는 기업에게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특히 특허권자나 실시 희망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라이센싱을 할 수 있어, 매우 성공적인 특허 활용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특허권자와 실시 희망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피할 수 있고, 로열티 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차별이 없는 공정한 라이센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 비차별적 및 일괄 라이센싱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지 못한 후발 기업들에게 합법적인 시장 입장권을 아주 손쉽고도 헐값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시장 전체를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필요한 특허들이 경쟁사 간에 분산된 경우, 특허권자들이 후발 기업에게 특허 기술의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특허의 시장 보호 효과는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하물며 필요한 특허를 모두 모아 한꺼번에 실시권을 허락하는 방식은 그저 시장을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MPEG LA와 같이 비차별적 실시 허락 방식을택하는 경우, 로열티 금액이 너무 높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후발 기업을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중 일부가 실시권 없이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비차별적 실시 허락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대체로 자금력이 부족한 회사라도 기꺼이 로열티를 지불하

2) 어느 정도가 대등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8장을 참조하라.

3) 물론 폴라로이드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폴라로이드를 소멸시킨 것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새로운 상품이었다.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는 별도의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종이로 된 사진을 즉석에서 현상하지 못한다. 디지털 카메라와 폴라로이드 즉석 사진기를 결합시킬 면 어떨까?

4) MPEG LA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mpegl.com 참조

는 쪽으로 기울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금액이 제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MPEG LA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로열티 금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로열티는 사실상 통상 행해지는 할인 행사에서의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에 비하면 거의 무시해도 좋은 금액인 것이다. 이것이 애플이나 레인컴 같이 이 분야의 특허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회사들이 수많은 관련 특허를 가진 필립스나 소니 같은 회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배경 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특허권자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 분야에서도 이미 많은 필수 특허들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후발 기업들의 등장과 역전을 특허로 방어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많은 경영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설익은 기술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쟁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여 자신들도 이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일부는 실제로 뒤쫓아 뛰어든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뛰는 연구원들은 결국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솔루션들을 찾아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수 특허가 경쟁사들 사이에 분산된다. 그리고는 사업적으로 가장 부실한 경쟁사로 인해 시장

은 혼란으로 빠져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일단은 좀 조용히 할 필요가 있다. HP가 잉크젯 프린터를 만들던 과정에서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전략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든 HP는 자신들의 잉크젯 프린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다지 홍보에 열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어쩌면 다른 기업들이 HP의 홍보에 무관심했는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어떻든 HP가 필요한 특허들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경쟁사들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특허들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HP가 현재 잉크젯 프린터 시장에 가격의 거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수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추억이 담긴 예쁜 사진을 인화하지 못한 채 모니터에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설익은 기술에 대한 조급한 홍보는 기업 이미지나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초고액 연봉의 경영진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액션인지도 모르겠다.

후발 기업의 전략

한편으로, 특허 분산 효과는 유력한 원천 특허들이 이미 선발 기업들에 의해

선점당한 상황에서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후발 기업들에게 유용한 특히 전략의 하나로서 힌트가 될 수 있다. 즉, 선발 기업들 사이에 필수 특허들이 어느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아직 선점되지 않은 필수 기술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자신의 특허로 확보하는 것이다. 또는, 타인에게 선점된 필수 특허들 중에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특허권자(주로 개인 발명가, 대학 또는 사업에서 철수했거나 철수를 검토 중이거나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 등)로부터 이를 양수해 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금액을 현저히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없애거나 심지어 로열티 수입을 쟁길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은 기업 간 매출액의 차이나 특허 기술의 제품 기여도의 차이 등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 또는 로열티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에 관해서는 제7장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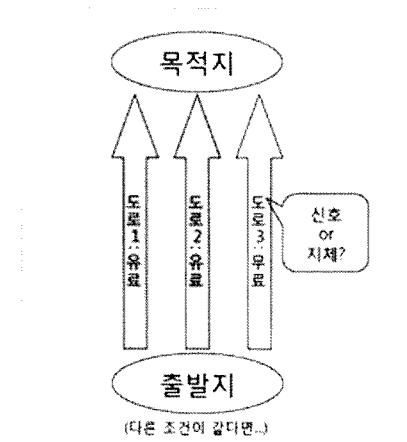
만약 모든 필수 기술들이 이미 선발 기업들에게 선점되었다면, 그때는 가장 실적이 취약한 선발 기업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고도 당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그 만한 자금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라면, 특허권을 선점한 기업

들이 MPEG LA와 같은 특허 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실시 허락을 원하는 기업들(Licensee)이 컨소시엄을 맺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기꺼이 로열티를 지급하겠으나 어떠한 특허권자에게도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으며 또 어떠한 후발 기업이라도 차별 대우를 받고 싶지는 않으니,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센싱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만약 개별 특허권자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라이센시들의 컨소시엄이 그 특허권자를 상대로 정당한 조건의 라이센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집단으로 진행하면, 개별 기업 간의 협상력 차이에 의해 손해를 볼 염려를 상당히 감소시키면서 합법적인 시장 진입 티켓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유 기술 대안의 영향

1

첫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이 세 개의 도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유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통행료가 없다. 체증이나 신호등과 같은 조건들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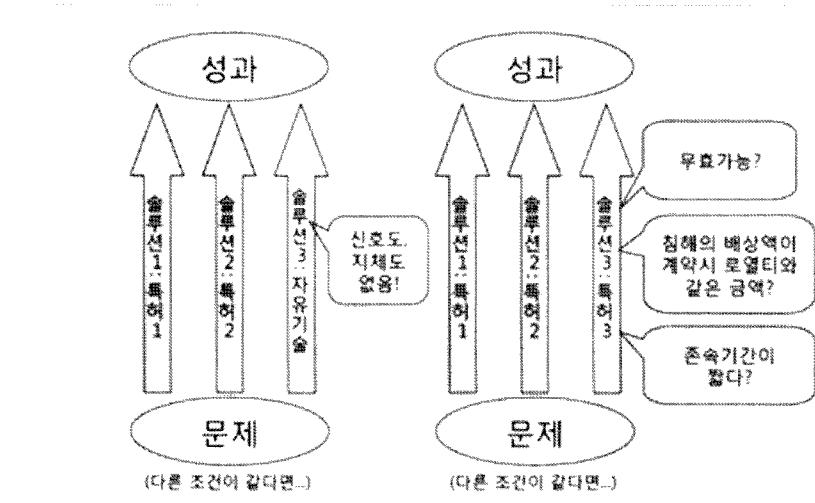
겠는가.

2

두 번째 질문 :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해결책은 이용

료를 지불해야 하고, 세 번째는 무료이다. 당신은 어느 솔루션을 이용하겠는가.(여기에서도 다른 조건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자.)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지만 않는다면, 두 질문의 답은 모두 세 번째가 될 것이다. 특히 기술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 성과 달성을 수준이 다소 떨어질지라도 무료인 솔루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것은 수많은 무료 소프트웨어와 불법 소프트웨어의 범람에 의해 쉽게 입증된다. 또 다른 예로서, 인공 감미료를 생각해 보자. 사카린이 설탕을 대신하여 널리 이용된 적도 있었으나, 그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인공 감미료들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 주자가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은 최근 20여 년간 상당 부분 설탕을 대신해 왔다. 그 아스파탐에 대한 특



허가 2000년대 초에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아스파탐 특허가 소멸된 지금도 여전히 다른 인공 감미료가 개발되고 있고 특허로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공 감미료 특허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인공 감미료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새로운 인공 감미료 특허에 유혹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더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아스파탐에 유혹을 느낄 것인가?

결국 인공 감미료 특허의 소멸로 인해, 그동안 아스파탐에 대항하여 나름의 가치를 갖던 다른 인공 감미료에 대한 특허들이 아스파탐 특허의 소멸과 함께 그 가치를 잃은 것이다. 유일한 희망은 아스파탐에 비하여 이들 다른 인공 감미료에 대해 시장에서 더 나은 평가를 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예컨대 훨씬 더 적은 양만 사용하여도 비슷한 정도의 단 맛을 느낄 수 있다거나, 정말로 부작용이 전혀 없을 뿐더러 도리어 건강에 좋다거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아스파탐보다 더 적은 양을 사용하면서도 비슷한 정도로 단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 과연 괜찮을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자유 기술 대안이 특허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전형이다.

독립적 대안 집합과 특허 공백 효과

아스파탐과 어깨를 겨누던 다른 인공 감미료들을 집합시키면, 인공 감미료의 대안 기술들의 집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은 서로 다른 물질들이므로 상호 독립적이고 따라서 이들을 (설탕에 대한 인공 감미료의) “독립적 대안 집합”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어느 한 기술이 자유 기술이 되어 버리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머지 기술들이 아무리 훌륭한 특허 문서에 의하여 굳건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허들의 힘은 소멸된다. 특히 기술적 솔루션의 이용에는 체증도 신호등도 돌발적인 사고도 없다. 이를 “특허 공백 효과”라 부르자.

물론, 이러한 특허 공백 효과가 나타나기 위하여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들이 상호 간에 대체로 동등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더 우수한 가치를 갖는 기술은 이러한 대안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과제와 관련된 어느 기술이 다른 대안들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제품의 양산에 더 유리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술적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기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면, 이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의한 특허 공백 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현재 자유롭게 개방된

기술들보다 더 우수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가진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동등한 수준에서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이를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허 공백 효과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자사 제품에 적용되었다는 사실과 특허로서 실질적 효용을 갖는다는 것은 무관하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데, 왜 타사에 의해 뒤늦게 개발된 기술을 굳이 모방하려 들겠는가.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이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특히 존속 기간이 소멸된 특허 기술은 많은 경우 그 기술의 안정성과 재현 가능성에 충분히 검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개발된 기술은 안정성도 양산성도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어차피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타사가 개발한 기술을 차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이미 공개되고 검증되어 있는 자유 기술을 대신해서 왜 아직 신뢰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게다가, 만약 이러한 대안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더 더욱 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

등한 수준에 불과한 타사의 특허 기술을 굳이 모방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고, 결국 그 특허는 결코 침해되지 않은 상태로 만료될 것이다. 침해되지 않는 특허는 순수한 비용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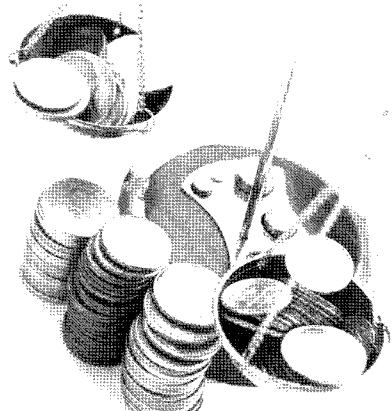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방어 차원에서 출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사에 적용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타사에서 개발하여 특허로 확보하게 되면, 이미 출시된 자사 제품이 도리어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우선 타사의 특허가 자사의 기술 개발보다 시간적으로 늦은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선발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존재하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이것이 사실대로 입증이 되느냐는 문제가 남긴다. 사실 실체적인 진실과 그의 형식적인 입증은 언제나 회의감이 들 정도로 까다롭고 소모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선개발의 입증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라면 굳이 비용이 지출되는 특허 출원 이외에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특허청 홈페이지에 막 개발한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사의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타사 기술의 출원 시점보다 더 늦은

경우인데, 이것은 독립적 대안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가 출원한 특허는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어 출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특허 공백 효과는 동등한 수준의 대안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개방 기술이 되어 버리는 경우, 아직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다른 특허까지도 그 실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미 있는 해결책을 특허로 확보한 경우, 이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모든 독립적 대안 집합에 대해서도 특허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주변 대안 기술에 대한 특허들이 야 말로 실제로 중심 기술에 대한 특허의 효력을 지켜주는 훌륭한 방어 특허가 된다. 그러나,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방어 차원에서 출원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 침해를 막아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기술 사용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사뿐이라면, 그저 누구도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기술 내용을 공개하거나, 차근히 내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충분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독립적 대안들을 출원하는 경우 그들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독립적 대안들은,

문제가 되던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던 과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해결책들이므로, 과거의 기술과 비교하면 모두 진보된 기술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 대안들을 상호간에 비교한다면, 이들은 서로 동등한 정도의 기술적 또는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므로, 적어도 그들 중 최초의 대안이 공개⁵⁾된 후에는 주변 대안들의 진보성은 부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후발 대안이 개방 기술이 되어 버리고, 결국 이에 의한 특허 공백 효과가 발생하여 최초의 중심 기술에 대한 특허도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원천 기술의 개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대안들을 별도로 보호하



5) 현재 대부분 국가의 특허법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 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특허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만 동기간이 경과된 후 공개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자국인의 특허도 등록 후에는 전문이 공개된다.

는 특단의 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최초의 대안을 창안한 특허권자는 그 최초의 특허 출원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조속히 다른 독립적 대안들도 발굴하여 이들 모두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초의 대안보다 더욱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만 하는데, 시장의 진화는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실무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으로, 현실을 살펴 보면, 실제로는 대등한 정도의 기술적, 상업적 가치를 가질 뿐인 많은 독립적 대안들이 출원되고 이들은 소위 “특허법상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등록된 특허들은 특허권자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도 주지 못한 채 등록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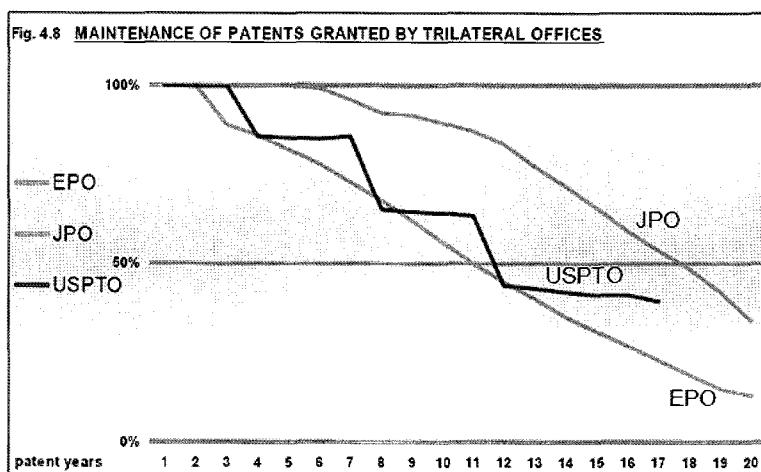
유지료를 부담시킬 뿐이다. 아래 그림은 20년의 특허 수명 기간 동안 실제로 그 유지료가 납부되는 기간을 도시한 도표이다. 일단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여 등록시킨 특허들의 50% 이상이 포기되는 기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 12년, 일본에서는 약 17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는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특허 공백 효과에 대한 두 번째 반론으로는, 다른 동등한 독립적 대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을 모방하는 기업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때는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이고 로열티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의 둘 중 하

나일 것이다. 즉, 이 기술이 실제로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무언가 더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쟁사에게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라면 사실은 독립적 대안 집합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최소한 올바른 평가가 되지 않은 테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 공백 효과는 대등한 수준의 성취를 가져오는 대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기 바라며, 특허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관하여는 제3장과 제7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후자라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은 탓이다. 당신의 회사가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란다면 이 책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어수룩한 경쟁사가 당신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침해하기라도 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독립적 대안 집합 이론의 확장

앞에서는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 중에서 어느 하나가 개방 기술이 되는 경우 나머지 기술들에 대한 특허의 가치가 사라지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하나의 독립적 대안 집합에 속하는 기술들이 모두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의 기술에 대한 특허의 로열티가 다른 특허에 대한 로열티보다 낮거나 여타의 유리한 조건하에 실시 허락이 제공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휴



[그림 4. 주요국의 특허 등록 유지율]⁶

대 전화 분야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 휴대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던 중, 유럽의 GSM 방식 대신 미국 웰컴사의 CDMA 방식을 도입했다. 그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CDMA의 상용화를 선도함으로써 향후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국가로 CDMA 관련 장비를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기대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자국내에서 CDMA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세계적인 GSM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업계에서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CDMA의 비싼 로열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웰컴사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 한국이 지불했던 것 보다 더 낮은 금액의 로열티를 제안하는 경우, 이에 대해 한국이 크게 반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에 원인의 하나가 있기도 할 것이다. 어떻든 자국에서의 상용화에 성공은 했으나 웰컴이든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든 파이를 키우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GSM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독립적 대안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쓸만한 기술이 이미 뿐만 아니라 상태에서 뛰어든 기업이, 기존 기술보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대안을 창안하고 이들에 대해 특

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를 통해 시장을 넓히거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도적 결함

3

세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세 개의 도로가 모두 유료 도로인데, 그 중 세 번째 도로는 잘만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는가.

4

네 번째 질문 :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이 세 가지 있다고 하자. 세 개의 도로가 모두 유료 도로인데, 그 중 세 번째 도로는 잘만 하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도 있다. 게다가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처음 지불했어야 할 통행료와 같은 금액만 지불하면 되고 당신은 여전히 익명으로 보호되며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다른 조건이 대체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느 길로 가겠는가.

세 번째 질문에서는 약간 주저함이 있겠지만, 네 번째 질문에서는 거의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특허의 세계에

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현재의 실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들이 무효가 되거나 그 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⁷⁾ 특히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에 있어서 의도적인 침해자와 과실성 침해자가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손해 배상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 지불되는 로열티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까지 하다. 미국에서는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정한 후, 이를 세 배까지 증액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침해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판결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사후에 발각되어도 원래 지불했어야 할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도리어 순진하게 처음부터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협상력에 압도되어 판결에 의한 손해 배상액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지불

6) http://www.lrlalateral.net/lsl/lsl_2005/lsl2005.pdf

7) 분쟁에 휘말린 특허기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비율은 모든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그 수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출원된 특허의 등록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허 무효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허청의 대응책중 하나로서 가능한 한 심사를 깨다롭게 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의심은 이러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될 위협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 침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불할 금액은 같은데,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미리 로열티를 지급하겠다고 특허권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가?

특히나 소송 과정에서 침해가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것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 기술이 소송의 과정에서 알려지는 경우이다. 이는 특허청의 선행 기술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특허와 선행 기술 사이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사관이 그 선행 기술 자료를 심사 과정에서 검토했다고 해도 특허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 심사관과 판사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물론 특허 기술과 경쟁사의 기술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동등하다 하더라도 특허 문서가 부실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허 문서가 부실해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불필요한 한정 사항을 권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거나, 용어 자체를 매우 한정적인 의미만 갖는 좁은 용어를 사용했다거나, 문구의 범위는 넓게 작성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시 예가 부족하여 충분한 권리 범위가 지지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부실한 특허는 단지 무용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다. 지켜야 할 기술을 지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마저 모방자에게 내어주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해 배상과 관련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각국의 특허법에서는 침해 품을 폐기하거나 침해 행위에 사용된 제조 설비 등을 폐기하여 예상되는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코닥이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코닥은 이미 판매된 제품 전체를 수거하여 폐기하고 공장 설비까지 폐기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코닥의 침해 행위가 워낙에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내려진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었다. 한국에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공장 설비는커녕 이미 판매되었거나 생산된 제품의 폐기를 명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침해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허 침해는 침해자의 사업장에서 침해자의 전

적인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이나, 의료 시술이 전적으로 의사의 통제하에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물 소송이나 의료 소송과 달리, 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그 모든 증거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제시하여야 할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 개시 절차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물며 이러한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떻겠는가. 이러한 사실 수집과 입증의 어려움은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힘겨운 탐정 놀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부담이 단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특히 제도가 특허를 통해 모방품으로부터 시장을 지키려는 특허권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 여기 저기서 모방품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모방자를 추적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천신만고 끝에 승소하였으나, 그 결과는 애초에 받을 로열티와 동등한 수준의 손해 배상밖에 받지 못하고, 그나마 여기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특허권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발명을 하고 특허를 획득한다는 것인가. 결국, 특허 제도 자체보다, 소송에 휘말리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평소에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들을 돈까지 줘 가면서 이겨달라고 고용해야 하는 꼴 끄러움 등이 특허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⁸⁾ 이러한 사정은 사법부의 '형식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자. 현재 제시된 사실들을 모아 놓고 가장 적합해 보이는 모자이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 결함 없이 사실들을 배열할 수 있고, 여기에 법조문을 적용하여 결론을 만들면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판결문이 되는 것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부족하여 특허 사건 이외에도 많은 사건을 취급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동일한 발명일지라도 미국의 특허와 다른 나라의 특허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현상을 쉽게 설명해 준다.⁹⁾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당국의 정책에 의해서도 특허의 가치는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다. 미국의 연방 무역위

원회(FTC)는 1975년에 제록스에게 경쟁사와 협력사 모두에게 건식 복사기 관련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결정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의 시장에 밀려들어와 결국 제록스는 이 시장에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만은 명확한 것 같다. 2011. 10 |

“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한다.¹⁰⁾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특허권자가 특허의 행사를 빌미로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책 당국의 사고 경향은 개발 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듯하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자국 기업보다 타국 기업이 자국에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 기업의 특허로 인해 자국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이러한 믿음이

8)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 최소 100만불 이상 소요되고 한다. 미국의 변호사 수입료가 미국의 특허를 가능한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은, 변호사 수입료가 낮은 나라에서는 동일한 발명의 특허가 빈번히 침해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더 이상 가설이 이설 수도 있을 것이다.

9) 시장의 규모에 의해 동일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의 특허가 갖는 가치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에 비해 시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유럽이나 일본의 특허가 여전히 미국의 특허에 비해 그 가치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0) Kevin G. Rivette, David Kline, *Rembrandts in the Attic: Unlocking the Hidden Value of Patents*(Korean language version), Sejong Books, Inc, 2000, 64-65